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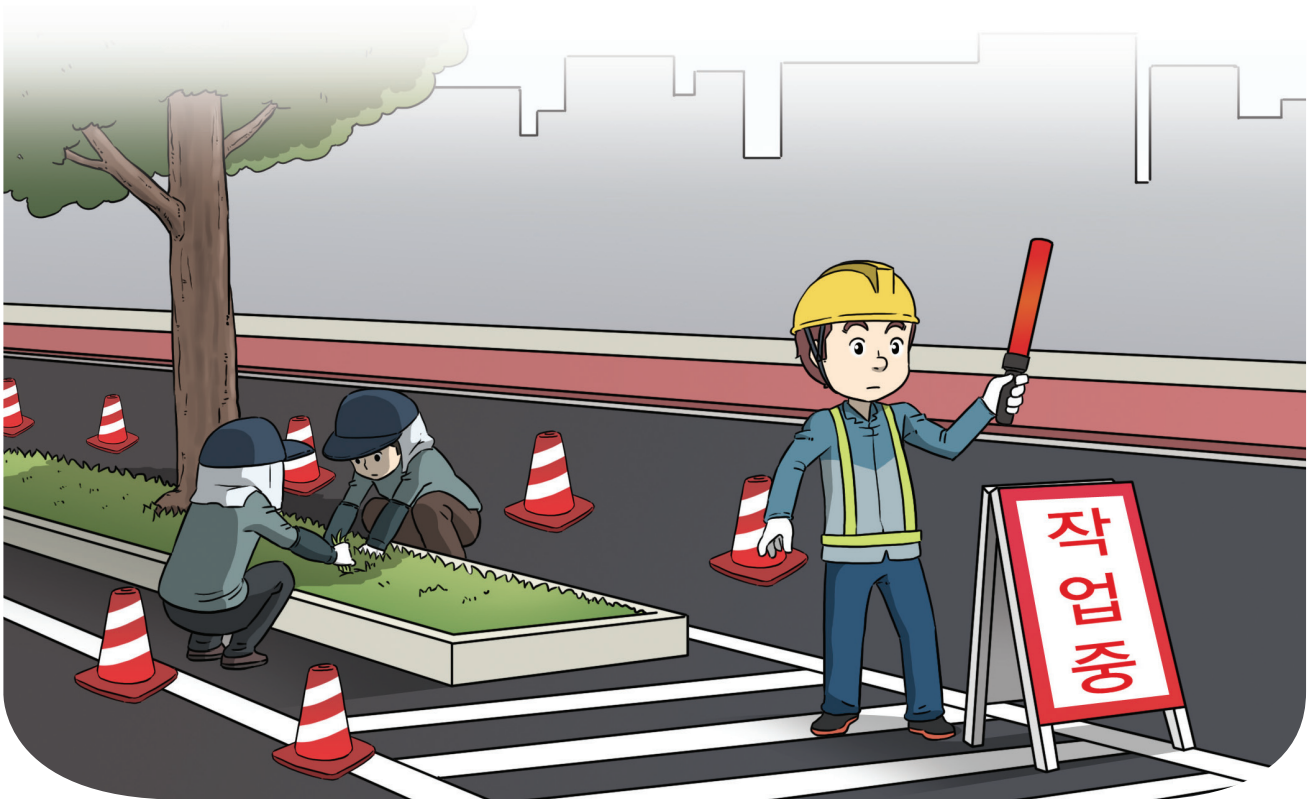
도로변 조경/제초작업

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

도로변 화단조경 · 제초 등의 작업이란?

도시의 미관을 위해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조경하거나 제초, 정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,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.



● 지자체의 대표적인 일자리사업 ●

- 공공근로사업 :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
- 희망근로프로젝트 :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 자리를 만드는 사업 (2009년 6월 ~ 2010년 상반기)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: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사업(2010년 하반기~)
- 노인일자리사업 :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창출,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



주요 위험요인

- ✔ 도로변에서 작업 시 주행 차량에 치임
- ✔ 도로 무단횡단 시 차량에 치임
- ✔ 작업 또는 이동 시 넘어짐
- ✔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
- ✔ 일사병 · 열경련 질환에의 노출

안전대책

- 도로변 또는 중앙분리대에서 작업 시 전방에 차량 유도자 배치
 - 유도봉으로 충분한 거리 앞에서 유도 실시
- 무단횡단 금지 등 최대한 도로교통 준수
- 빛 반사 띠가 둘러지고 눈에 띄기 쉬운 색상의 조끼 또는 작업복 착용
- 가능한 인도(人道)에서 작업하고, 도로상에서의 작업금지
- 작업 시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하고, 샌들 · 슬리퍼 착용금지
- 제초작업의 경우, 목적에 적합한 안전화 · 작업복 · 보안면 ·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
- 제초 등의 작업 시 벌집이 예견되는 장소는 신중히 작업 전 확인
- 중량물은 동력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취급하거나 동료와 함께 취급
- 작업 전, 작업 중, 작업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시
- 야외에서의 오랜 시간 작업금지 및 충분한 휴식 취하기
- 폭염 시 작업금지 및 충분한 음료 섭취 등



도로변에서 작업



도로변에서의 환경정화사업



재해사례 : 도로변 화단조경작업 중 차량에 치임

개요

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의 근로자(여, 68세)가 도로변 화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김매기 작업을 하다가 일어서던 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지나던 차량에 치임



발생원인

- 도로변에서 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
- 장기간 쭈그려 앉아 작업을 하여 이에 따른 근력 부족으로 인해 뒤로 넘어짐

예방대책

- 작업 전방에 차량 유도자 배치 및 작업표지판 게시
- 쭈그려 앉아 작업 시에는 단시간 작업하고 충분히 휴식 시간 제공

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작업 전일 숙면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춰 입는다.
 - 작업복의 테두리에 부착된 빛 반사 테이프 상태 확인
 - 미끄럼방지 기능의 신발, 방진마스크 착용 등
- 슬리퍼 또는 샌들 착용을 금하고, 신발을 바로 착용한다.
- 여름철에는 충분한 음료와 식염을 지참하고,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료 준비와 복장을 한다.
-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 준다.

작업 중

- 바닥의 돌부리 및 패인 곳 등을 확인하며 보폭을 작게 이동한다.
- 전방에 차량 유도자를 배치한다.
- 주행차량과 마주보며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, 전방에 작업 표지판을 게시한다.
- 도로변 작업 시 가능한 인도에 붙어 청소한다.
- 중량물은 동료와 둘이서 함께 든다.
-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하고, 식염 섭취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.
- 여름철 채양이 넓은 시원한 모자를 착용한다.

작업 후

- 작업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, 정리정돈을 한다.
-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당일의 작업을 마무리 한다.
-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, 샤워를 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제34조 (전용 보호구 등)
 - 제603조 (〈곤충 등〉 예방조치)
 - 제33조 (보호구의 관리)
 - 제82조 (구급용구)
 - 제604조 (노출 후 관리)

